

용역개요(실시설계)

1. 용역명 : 지하층 아트리움내부 민원실(용도변경) 설계용역
2. 용역목적 : 청사내 지하층 아트리움내부 민원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사항 검토·시행 및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등을 실시하여 용도변경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개요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7-6번지
 - 규모 : 면적 - 19,665㎡ (지하4층- 지상20층)
준공년도: 1994. 8. 24
 - 용역범위: 청사내 지하층 아트리움 내부 민원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 검토·시행 및 용도변경관련 설계도서 작성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 일
5. 계약자격 : 건축법에 의하여 설계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축사 면허 소지업체
6. 소요예산
 - 예산과목 : 본부, 영업비용, 경비, 지급수수료
 - 설계용역금액: 3,630천원
7. 성과품
 - 설계도서 :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입면도,단면도,기타(각 4부씩)
 - 검토서 : 조경면적,주차대수,정화조용량, 소방설비 산출서
 - 용도변경관련 필증 각 1부.

과업지시서

(청사내 지하층 아트리움내부 민원실 설계용역)

2004. 7

총 무 처

□ 용역일반사항

1. 본 과업은 청사내 지하층 민원실(용도변경) 설계용역 과업으로써 도급자는 본 과업 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설계 용역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으로써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인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자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및 시행을 포함한다.
3. 본 설계용역 진행 중 제반 대관업무 및 인허가사항 등 일체의 관청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일체의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종료는 관련법 제 규정에 의한 인허가, 기술심의 지적이 있을 시 이를 보완 수정조치를 포함한다.
5. 본 과업 시행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5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시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설계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설계 발주부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발주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27-6
 - 전화 : (02) 2290 - 6186
 - 팩스 : (02) 2290 - 6211
7. 설계진행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시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을”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9. “을”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경우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에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을”은 설계와 병행하여 필요한 조사를 “을”이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1. “을”은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공사중이나 공사완료 후에 인명피해, “갑”의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을 불구하고 “을”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2.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등)을 “갑”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설계 변경 도면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갑”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을”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갑”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 할 때
14. 설계용역 보고서에 참여기술자를 명기하며, 설계 전 참여기술자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별 첨 :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예시)

○ 용역명 :

○ 용역기간 :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고
	참여업무내용	참여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비고란에는 기술 등급을 기재(예- 특급기술자 등)

가 격 산 출 조 사 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2004. 적산자료 P1289~1290 참조)

○ 적용공사비 : 49,280,000 ÷ 1.1 = 44,800,000원 (*견적가)

○ 적용요율

$$\cdot 6.06 - \frac{(44,800,000 - 30,000,000) \times (6.06 - 5.46)}{(50,000,000 - 30,000,000)} = 5.616$$

○ 실시설계비

$$\cdot 44,800,000 \times 0.05616 \times 1.4 = 3,522,355원$$

금액 : 3,630,000원

(단위: 원)

구분	단위	수량	산출조사내용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주)범한 종합 건축사사무소	상애 건축사 사무소(주)	
설계 용역비	식	1	3,522,355	3,300,000	4,000,000	3,300,000
VAT		10%	352,235	330,000	400,000	330,000
계			3,874,590	3,630,000	4,400,000	3630,000

조사자 : 성명 : 양 영 진 (인)

확인자 : 성명 : 문 태 영 (인)

※ 별첨 견적서 2부.

견 적 서

2004년 7월 20일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귀하 -

-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지하층 아트리움홀내부 민원실 (용도변경)설계용역
- * 용역금액 : 일금 삼백육십삼만 원정 (₩ 3,630,000)
(부가 가치세 포함)
- * 용역내용 : 지하1층 아트리움홀 내부민원실설치 용도변경에따른
도서작성및 대관업무
 - 도서작성
 - 1)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입면도,단면도,기타
 - 2) 조경면적,주차대수,정화조용량 산정및검토
 - 3) 소방설비 (스프링롤라,감지기) 변경설치 검토
 - 4)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및기재변경
 - 대관업무
 - 1) 성동구청 건축과 (용도변경) 처리업무
 - 1) 성동구청 지적과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업무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총 15일)소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60-1

(주) 범한 종합 건축사 사무소

대표 최 광 수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지하층 아트리움홀내부 민원실 (용도변경)설계용역 (단위 : 원)

구분	직종별	작업일수 (일)	소요인원 (명)	단가 (직접인건비)	금액	비고	
설계 용역비	1,현장조사 /검토분석	특급기술자	1	1	158,335	158,335	
		고급기술자	1	1	132,936	132,936	
		중급기술자	1	1	111,576	111,576	
		소 계				402,847	
	2,실시설계 /납품	특급기술자	2	1	158,335	316,670	
		고급기술자	6	1	132,936	797,616	
		중급기술자					
		소 계				1,114,286	
직접인건비					1,517,133		
직접경비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필요한 여비,제출 도서의인쇄비,또는 청사진비,측량비,토질 및재료등의 시험검사비등					440,020		
간접비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사무, 경리직원등의인건비,지급임차료,소모품비, 기계기구의수선및상각비,공과금,업무활용 비등 (직접 인건비의 110%)					1,668,847		
총 계					3,630,000		

견 적 서

2004년 7월 20일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귀하 -

* 용역명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지하철 마포리움출입구 민원실 (용도변경) 설계용역

* 용역금액 : 입찰 산액예산상만 원정 (₩ 4,000,000)
(부가 가치세 별도)

* 용역내용 : 지하1층 마포리움출입구 내부민원실설치 용도변경에따른
도서작성및 대감업무

- 도서작성
 - 1)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입면도,단면도,기타
 - 2) 전경면적,주차대수,경화조용량 산정및검토
 - 3) 소방설비 (스프링클러,감지기) 변경설치 검토
 - 4)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및기재변경
- 대감업무
 - 1) 용도변경 건축과 (용도변경) 처리업무
 - 1) 용도변경 지적과 건축물관리대장 처리업무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총 15일)소모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4-1
삼에 건축사 사무소

대표 조 반 언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지하층 아트리움홀내부 민원실 (용도변경)설계용역 (단위 : 원)

구분	직종별	작업일수 (일)	소요인원 (명)	단가 (직접인건비)	금액	비고	
설계 용역비	1,현장조사 /검토분석	특급기술자	1	1	158,335	158,335	
		고급기술자	1	1	132,936	132,936	
		중급기술자	1	1	111,576	111,576	
		소 계				402,847	
	2,실시설계 /납품	특급기술자	2	1	158,335	316,670	
		고급기술자	8	1	132,936	1,063,488	
		중급기술자					
		소 계				1,380,158	
직접인건비					1,783,005		
직접경비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필요한 여비,제출 도서의인쇄비,또는 청사진비,축량비,토질 및재료등의 시험검사비등				255,694		
간접비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서무, 경리직원등의인건비,지급임차료,소모품비, 기계기구의수선및상각비,공과금,업무활용 비등 (직접 인건비의 110%)				1,961,301		
총 계					4,000,000		